

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호 “우편”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한다.

제8조 제1항 중 “제26조”를 “제26조 제1항”으로, “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”는 “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”로 하고, “단, 구청장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 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.”를 신설한다.

제9조 제2항 중 “보통우편”을 “일반우편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중 “보통우편 송달부”는 “일반우편 송달부”로 하고 본문 내용 중 “보통우편”을 모두 “일반우편”으로 한다.

제14조 제1항 중 “미납구세”를 “법 제64조에 따른 미납구세”로 하며, “다만, 임차인과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”를 삭제한다.

제17조 제목 “공탁 등”은 “교부금전의 예탁”으로 하며, 제1항 중 “공탁 하거나 또는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”를 “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”로 하고 “다만, 구 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”를 삭제한다.

제18조 중 “압류할 수 있다”를 “압류한다”로 한다.

제19조 제1항 “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”를 삭제한다.

제22조 제1항의 “제67조 및 제68조”를 “제80조 및 조례 제22조”로 한다.

제23조의 “징수하여야 한다”를 “징수할 수 있다”로 “부과징수하여야 ”를 “부과징수”로 한다.

제24조는 삭제한다.

제25조 제1항 제1호 중 “공탁수령증”은 “공탁영수증”으로 제2호 중 “국채·지방채의 등록필증서”는 “국채·지방채, 사채의 등록확인증”으로 제6호 중 “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”은 “등기필증,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”으로 한다.

제27조 제3항 중 “자력”은 “자력(資力)”으로 한다.

제28조 중 “3월”은 모두 “3개월”로 한다.

제29조에서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7조 제1항 중 “유보하여야 한다”를 “보류할 수 있다”로 하고 제2항 중 “유보기간”은 “보류기한”으로 한다.

제39조 제3항 중 “10일”은 “1개월”로 한다.

제45조 제2항 중 “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·질권·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”을 “법정기일 전 1년내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임대차계약, 전세권·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,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”으로 하고 “통정한”은 “서로 짜고한”으로 한다.

제47조 중 “법 제141조”를 “법 제141조 제1항 각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